내진설계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 … 지진대책법 연말 시행

이르면 올 연말부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층고 3층·연면적 1000m²"를 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 평가에서 불합격되면 내진설계가 가미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내진성을 보강해야 한다.소방방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9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공공건물은 내진성능을 평가받은 뒤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성을 높이도록 했다.민간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설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88년 이전에 건설된 3층·연면적 1000m² 이상인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성능 검사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면 지방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예정대로 연말에 법이 시행되면 지방세법을 고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내진설계 보강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낮춰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그동안의 지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위험 지역 분류작업도 본격화된다.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고 해안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해일위험지도도 만들기로 했다.효율적인 지진감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력연구원 등이 제각각 실시하고 있는 지진 관측을 통합하고 관련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은 가스관 송유관 철도 등 국가 인프라시설물에 대해 내진 등급을 매기는 것은 물론 등급별로 허용 피해범위를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2005년 3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에 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켰던 정부는 1년6개월여 동안의 검토 끝에 지진재해대책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유명무실

KBS 뉴스9 보도 내용 (2007. 2. 20)

〈앵커 멘트〉

한달전의 오대산 강진으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됐습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일부 건축사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법규때문에 엉터리 내진설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완공된 5층 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행 건축법 상 지난 2005년부터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봤습니다.

내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충격적인 답변이 이어집니다.

〈녹취〉

건축사 : (그 건물 내진 설계를 하셨나요?) "내진 설계를 안했는데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안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말 몰라서 안 한 것일까?

담당 구청 건축과. 어찌된 일인지 해당 건축사가 제출한 인허가 관련 서류에는 내진 안전 확인서 한 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건축사의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건축과 담당자 :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했다고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첨부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죠."(내진 설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했다고 하면 한 줄 아는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를 누가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6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 뒤로 보이는 3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들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현직 건축사(14년 경력) : "심하게 말하면 구조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청에 내진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도 무사통과되는 요식 행위가 이뤄지고 있죠."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도 현행 건축법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인터뷰〉

강병옥(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 "앞으로 절차와 관련해 심도있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거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평창 지진이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 여기에 일부 건축사들의 안전불감증까지 맞물려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봄바람

헐지 않고 고쳤는데 36평 → 45평 넓어지고 값 오르고

올 들어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집을 넓히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체들에 상담이 몰리고 사업 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리모델링이 잇따른 재건축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리모델링 연한 완화(20년 →15년, 다음달 시행 예정)와 최근 리모델링으로 거듭난 단지도 이에 대한 관심 증대에 한몫한다.하지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건축제약 등 넘어야 할 고개가 적지 않아 섣부른 기대는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강남권서 강북.신도시로 확산

리모델링은 재건축 규제가 주된 계기였다.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건축이 막힌 강남권에서 2001~2002년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정도에서 추진되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목동과 강북, 일산.분당.평촌.안양 등에서도 관심이 부쩍 늘었다.

목동 9단지가 지난달 중순 사업설명회를 연 데 이어 10, 13단지가 이달 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미도.보람.한양 등과 평촌 목련우성, 산본 한라주공, 일산 성저삼익, 분당 그린타운 등도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모임을 결성했다. 대림건설 이권재 차장은 "지은 지 20년이 안 된 단지들도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타진하고 있다"며 "문의전화가 하루 20여 통씩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쌍용 클래식예가(옛 궁전)는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불신을 많이 씻어냈다. 이 아파트는 법이 허용한 대로 전용면적을 30% 늘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 첫 단지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연결했다.

45평형의 시세가 12억원 선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1년6개월 전보다 공사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4억원가량 올랐다.

인근 현대공인 차만갑 사장은 "지은 지 20~30년 된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다를 게 없어 수요가 몰려 다른 단지보다 10%가량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시행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사업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리모델링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준공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서울에서 10만9000가구(185개 단지), 분당 등 신도시 3만7000가구(46개 단지)로 추산된다.

◆ 실수요로 접근해야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의를 요구한다. 리모델링은 분양 수입 없이 자기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재건축에 비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

건물연한 등의 완화로 리모델링 문턱은 낮아졌지만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조합설립의 주민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이지만 착공 전 행위허가(사업승인)를 받을 때는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일부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우려해 건축제한 완화에 옹색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단지도 있다. 건물 동이 "ㄱ.ㄷ.ㅁ"자 모양으로 일부 서로 겹치는 단지는 기술적으로 증축에 한계가 있다. 쌍용건설 박윤섭 부장은 "너무 크거나 작은 단지보다 300~800가구 규모이고 평형은 30~40평대인 단지가 사업성이나 평면구조 개선 등에서 낫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업체 설계업 겸업 허용 논란

건축사협 '하청업 전락, 부실만 양산' 반발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건축사 업계와 건설업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확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건축사 업계는 설계, 시공, 감리 분리는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에도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이 이뤄질 경우 각종 부작용 양산은 물론, 심각한 업역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건축사협회 회원 200여 명은 1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대형 건설업체에게 설계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한 뒤, 연구용역보고서를 행자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사들이 건설사 하청업체로 전락함으로써 감시·감독 기능 중단에 따른 부실 건축물 양산이 우려된다"며 "건설사의 설계, 감리, 시공권 독점은 아파트 분양가를 호도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축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턴키업체가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밥그릇'만 지키려는 수구적인 자세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설계 업체들의 경우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까지 겸업하며 대형 민간공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업역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역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들도 건축사 업계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반박하며 정면 대결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의 주장에 밀려 대형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 허용을 철회할 경우 '역(逆)' 집회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도내 건축사 업체 중 시공업을 겸업하고 있는 몇몇 업체는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며 건설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건축사들의 겸업 반대 주장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수구적인 발상으로 풀이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렵기는 설계업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도 마찬가지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설계 겸업은 과당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 구조조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도에 국내최대 아쿠아리움 세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에 아쿠아리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의 합작사)가 송도국제도시 중앙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 계획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NSC는 1만7000m^2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2만m^2의 아쿠아리움을 건립할 계획이다.

송도 아쿠아리움은 코엑스의 2.3배(시설 면적 8600m^2), 부산의 1.5배(1만3000m^2)로 국내 최대 규모.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전시 수조 90개에 600여 종 4만 마리, 부산 아쿠아리움은 전시 수조 40개에 250여 종 3만5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어 연건축면적에서 이들보다 규모가 큰 송도 아쿠아리움은 더 많은 해양생물을 전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NSC는 조만간 송도 아쿠아리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 건립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쿠아리움은 관람객들이 바다 속을 걸어 다니며 해저 세계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최첨단 해양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송도 아쿠아리움 건설은 해양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 전문회사인 미국의 IDEA가 맡을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연수구 옥련동 4만7000m^2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1만3000m^2 규모의 인천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 회사가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미아리 텍사스 초고층 빌딩단지로 탈바꿈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유명했던 서울 성북구 월곡동 88번지 일대가 초고층 빌딩단지로 거듭난다.

서울 성북구는 월곡동 88번지를 포함한 미아사거리 일대를 '길음 월곡(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초고층 빌딩을 유치하는 등 중심상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정비구역이던 미아사거리 지역 주변인 길음동 31번지 1호 일대를 '계획정비구역(길음1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 또 기존 월곡1, 2구역 면적변경 조정과 녹지조성면적 확충을 위한 '공원'을 늘리는 등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발키로 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해 2009년 1월까지 2년간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구는 월곡동 88번지 일대를 계획정비구역, 전략정비사업, 자율정비구역으로 나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 25층 ~ 41층짜리 21개동을 유치키로 했다.

구는 우선 계획정비구역인인 미아사거리와 접해 있는 '성북1구역' 1만4900m^2에는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주거와 문화, 업무, 집회 및 판매 시설이 들어서는 41층짜리 초고층 문화1동, 주상복합 3개동 등 4개동이 건립키로 했다. 또 성매매집결지가 집중되어 있는 '월곡1구역' 5만3773m^2에는 지상 33~40층짜리 초고층 상가1동, 주상복합 8동 등 9개동을 건립하고 공원 2곳(5298m^2)을 조성해 주민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을 조성키로 했다.

전략정비구역인 길음뉴타운과 인접한 '길음구역' 2만8178m^2에는 지상 27층짜리 초고층 문화교육 1동, 주상복합 3동 등 4개동과 공원(551m^2)을 조성할 계획이다. '월곡2구역' 1만7686m^2에는 지상 33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공원(504m^2)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동서간 폭 20m 규모의 관통도로도 개설하고, 도봉로, 미아로, 월계로로 이어지는 폭 15미터, 229미터의 P턴 도로도 만들 방침이다. 미아사거리를 거치는 분당선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해외건설수주 쑥쑥..대형건설사 15조6천억원 목표

- 한건협 30개 회원사 해외수주 15조6557억원..전년比 46.1%↑

- 현대건설 3조1500억원, 대우건설 1조6400억원 목표

"돌파구는 역시 해외 시장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회원사인 30개 대형건설업체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집계한 결과 총 15조65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조7186억원보다 무려 46.1%가 늘어난 수치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000720)이 3조1500억원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실적 2조3500억원보다 34% 늘어난 목표다. SK건설도 2조7200억원에 달하는 해외 수주 목표를 책정했다.

작년 1조2700억원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한 대우건설(047040)은 올해 이보다 29.1% 증가한 1조6400억원을 해외 수주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말 베트남 하떠이성 북안카인 신도시를 따내는 등 총 76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포스코건설은 올해 배 이상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해외에서 수주한다는 복안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늘려 잡은 데는 해외 시장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과 함께 국내 건설시장의 부진이 예상돼, 이를 해외에서 만회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주택부문이 위기에 직면했고, 공공 부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해외 수주 목표를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 서쪽 리히터규모 4.8 지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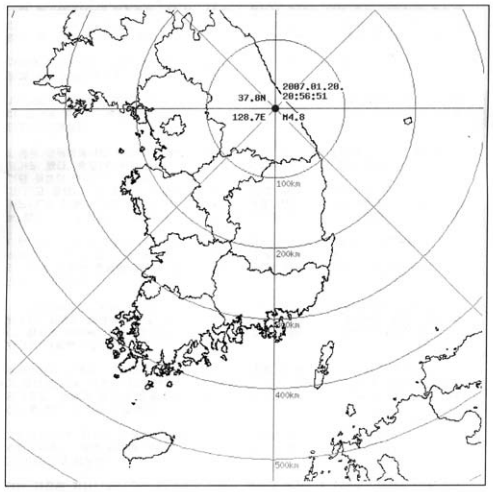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 진동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기상청과 방송사 등에는 지진 발생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에도 '지진'이 검색 1위에 올랐다. 추

2007년 1월20일 저녁 8시56분께 강원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 8시 56분 51초, 강원도 강릉시 서쪽 23km 내륙 지역(37.75 N, 128.69 E)에서 규모 4.8의 지진파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정확한 지진의 규모와 진앙지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규모 4.8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발생을 감지할수 있는 수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날 지진은 서울 지역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인들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진앙에 가까운 강릉 지역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으며 또 지역에 따라 건물 타일이 떨어지고 유리창에 금이 가는 등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 진동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기상청과 방송사 등에는 지진 발생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에도 '지진'이 검색 1위에 올랐다. 추가 지진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엎드리고, 붙잡아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하던 전열기구, 가스렌지 등을 확실하게 끄고,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지진 '규모(Richter scale)'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주기.진앙 등을 계산해서 산출한다. 규모 1.0 지진은 폭약(TNT) 60톤급 파괴력을 가지며 규모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30배씩 늘어난다. 미국의 지진학자 C.F.리히터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지진의 크기를 정량화하면서 1935년 '규모'의 개념을 도입했다.

절대 수치인 '규모'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진도(Seismic intensity)'는 일종의 상대적 수치로 어떤 장소에 나타난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수치화 한 것이다. 진도는 지진의 규모와 진앙거리. 진원깊이에 따라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질구조.구조물의 형태 및 인원현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규모와 진도는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으며 하나의 지진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의 규모는 동일 수치이지만 진도는 유동적이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강릉 주민들은 느닷없이 땅과 주택이 흔들리자 한때 불안에 떨었다. 특히 경포 등 해안지역 주민들은 지진이 또 오거나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강릉시 안목항에서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박모(43)씨는 "10초 남짓 건물 벽과 바닥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고 방안에 있던 화분이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였다"며 "마치 바로 옆에서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지진이 발생하자 강원지방기상청 등에는 "지진이 맞느냐", "대피해야 하느냐"는 전화 문의가 빗발치면서 한때 불통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여진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까지 진동이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이날 밤 아파트 내부의 화분 등 집기류가 수초간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돼 청주기상대에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강원 지진의 여파로 보인다. 지진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회사원 이모씨(31)는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흔들렸다. 지진인 것 같아서 놀라 집 밖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진에 놀란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100여 통이 넘게 걸려오면서 업무가 마비됐다"며 "다행히 지진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도 "건물과 창문이 흔들리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의 지진"이라며 "현재 피

해 신고를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향후 지진의 파장 및 추이를 놓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소방방재청도 "강릉 일대에 여진이 우려되니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일 오전 9시6분께 강원도 정선군 북북서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한 데 이은 것으로, 올 들어 두 번째

한 · 미 FTA 6차…건축사 · 기술사 미국진출 길 열린다

우리나라 건축사와 기술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미국은 전통동양의학, 건축사, 기술사 등에 대한 자격을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제안한 자격 대상 중 전통동양의학은 미국의 침구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한의사에 비해 자격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리 협상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측이 상호인정 대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반면 건축사와 기술사(엔지니어링)는 2006년 12월 초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제5차 협상 때 우리측이 제안한 상호인정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양국이 최우선적으로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3년 이내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우리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이후 1년 내 협의를 개시한 뒤 최초 논의 결과를 2년 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사, 세계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틀 마련

「기술사법」 개정 공포 –
(법률제8268호)

기술계 최고 자격인 기술사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중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성 · 관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선진국 수준으로 그 전문성과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법」이 오늘 '07. 01.26(법률제8268호) 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04년부터 기술사제도 총괄운영 부처의 부재, 학 · 경력기술자의 기술사 동등인정 문제와 기술사에 대한 교육 · 훈련 미실시에 따른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저하 등 **국내 기술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해왔으며, 정부에서 발굴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었다.

기술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사 활용에 있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였고,

그간 기술사의 배출(노동부), 관리(과학기술부), 활용(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 업무가 분산되어 부재하였던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과기부 차관)**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함으로서, 국가간 협약에 따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내에서 취득한 기술사 자격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사자격의 국가간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 · 훈련을 의무화하여 기술사가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

이모저모

로 직무와 소양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자격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사의 활용관리에 있어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여 **기술사의 신고와 경력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별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가공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난 '05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확정된 학·경력자 제도폐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일정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인력을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각 부처 개별사업법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민관합동T/F('05.11~'06.07) 운영결과로 도출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36개)」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30)에서 확정하여 과학기술부가 각 소관 부처별로 해당 법령의 개정 등 시행계획을 제출받아('06.12.18)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술사는 '07.01월 현재 건설, 기계 등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붙임1.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

붙임2.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붙임 1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전	개정후
기술사제도 운영에 관한 부처*간 정책협의체 부재 *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청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 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 위원 :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기술사 • 주요 심의사항 – 기술사의 직무조정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등
기술사의 배출렝갸볜활용 업무가 분산되어 일관된 장기정책비전 수립 부재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공급 • 기술사 활용 장려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술시장 개방에 대비, 기술사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대응체제 미비 – 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협상창구 미비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 및 절차마련 • 「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자격기준 수립 및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FTA 등 시장개방 시 협상국 내에서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경력, 교육렸틔 실적 등의 정보가 분산관리 – 공신력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부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별 경력, 교육·훈련현황, 사업수행 실적 등 정보관리

붙임 2 기술사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Ⅰ. 배경 및 추진경위

□ 배경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관건

–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산업현장 최고 자격자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할 필요성 증대

○ 그러나 기술사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 운영 등으로

–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저하, 국제간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국내 체제 미비 등 문제점 발생

【 대통령 지시사항('04.5.24)】
인정기술사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국제적 통용성 제고 등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

□ 추진경과

○ '04.5.24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 정책연구(과학기술자문회의, '04.4~12)

○ '04.12~'05.9 국무조정실 중심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수립

–민·관합동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 설치·운영('04.12~'05.3), 제도개선 공청회(05.4), 관계부처 협의('05.7~9) 등 추진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05.11)

○ '05.11~'06.7 「기술사 우대 및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민관합동T/F*」 운영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참여

○ '06.12.22 기술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Ⅱ.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1.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에서 활용 및 관리 등 제도의 총괄 주관부처가 없어 일관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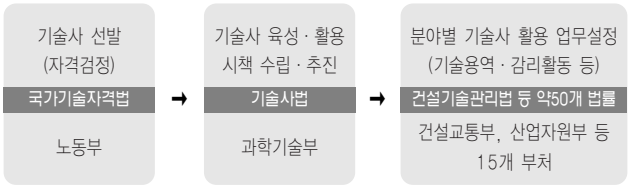

[기술사 제도 운영현황]

□ 개선방안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과기부 차관) 신설 및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마련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에 주요내용 반영('07.01)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완료('06.6)

2.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일정한 학·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자격취득 없이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학경력 기술자제도*로 자격제도의 실효성 저하

* 예시) 건설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가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

– 학·경력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기술사 수급혼란 초래

※ 건설분야의 경우 기술사는 16,877명,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경력자(특급기술자)는 93,788명으로 기술사의 5배('05.12월 기준)

□ 개선방안 주요내용

○ 학·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각 부처의 사업관련 개별법령 개정)

– 단,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

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중급 · 고급 · 특급)은 불허

□ 추진현황

○ 개정완료 법률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06.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06.12)

* 감리관련 학 · 경력자 관련 사항은 '07년 하반기까지 개정 예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07.1)

○ 개정추진 중인 법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측량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 미착수 법률 : 수로업무법령(해양수산부)

3.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타 분야 자격*과 달리 기술사에 대한 고유 업무영역의 설정이 미비하여 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저하 및 활동에 한계

* 건축사(건축사법 제4조), 변리사(변리사법 제22조), 법무사(법무사법 제3조) 등

□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등을 통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에 맞는 우대조치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추진현황

○ 민관합동T/F* 운영 및 국장급 조정회의(2회) 개최('05.11~'06.7)

* 팀장 : 과학기술기반국장,
팀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전문가

- 분야별 특성과 시장수요를 고려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도출

○ 기술사법 개정에 관련내용 반영('07.01)

- 기술사 자격취득 · 경력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4.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 부처적 국가대응체제 미비

- 그간,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업무가 분산 추진되어 FTA 등 국가간 상호인정 협의시 일관된 협상체계 미흡

※ 기술사 국제통용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의체 참여현황 : EMF 국제기술사(과학기술부), APEC 엔지니어링(노동부) 등

○ 국내 기술사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자격기준*에 미달

* 국제기술사 자격기준(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링 공통) : 인정된 공학교육 이수, 만족할 만한 계속교육 이행 등

□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술사 국제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로 지정 (외교통상부는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가입 추진('05.6월 준회원 가입)

* WA :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인증기관들간의 국제협의체

○ 국제적 수준의 기술사의 계속교육 이수 의무화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에 관련내용 반영('07.01)

- 국제기술사자격심사위원회 등 국제통용성 확보의 근거 마련
- 국제 수준의 기술사 계속교육 이수 의무화 등

Ⅲ. 향후계획

1. 제도개선 방안의 범부처 시행체계 확립

□ 민관합동T/F에서 도출된 과제 소관부처는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에 통보(~'06.12),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 수립*('07.01)

* 붙임 참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과제

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 발굴('07.6~)

□ 특급기술자 등으로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개별사업법* 개정완료('07년 상반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측량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등

2. 기술사제도 운영 추진체제 정비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07.6~)

○ 구성(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 89개 기술사종목의 주무부처(15개*) 국장급 공무원

  *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산·학·연 각 분야 과학기술 및 기술사제도 전문가 9인
- 기술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사회 추천전문가 5인

○ 주요 심의사항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 종목별 기술사 직무조정,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국내 기술사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자격심사제도마련('07.6~)

○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 참여

  * EMF(Engineering Mobility Forum)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링 등

-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 예) 자격취득전 공학교육 이수요건, 교육·훈련 및 경력요건 등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구비

- 자격종목별 세부 기술 분야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10~15개, 10명 내외) 구성

□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내실화

※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기술사의 교육·훈련이수 의무화('07.6~)

○ 기술사가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을 국제기준에 따라 3년간 90시간(학습단위)으로 규정하되, 시간 무게계수* 활용

* 교육의 효과가 높은 활동에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

[참고 : 주요국 기술사 교육·훈련 실시현황]

• 미국 : 연 30~50학점(주별로 차이를 둠)

• 호주 : 연 50학점, • 일본 : 연 50학점

○ 직무 및 공통분야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무형식교육을 학습시간으로 인정

- 논문·저서 등 집필·발표, 연수 등의 강사활동,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기술관련 심의활동 등

○ 개별 기술사는 매 3년마다 학습시간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정보 등록

〈참고〉

〈참고〉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

-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30) 후속조치 -

□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700억원이상(공사예정금액) 규모 공사의 기술사 배치 의무화(단, 건설공사 대형화에 따른 현행기준의 상향조정 병행 추진 : 300억원→500억원 등) ※ 단, 상향조정 미추진시 5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06. 11월 국회 제출) 시행('07. 7월 예상)전까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동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에 기술사를 별도항목으로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에 기술사 보유업체 우대(보유기술자수=기술사수×1.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수요 발생시 반영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06.12) - 종전의 학·경력자 불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기술사:5, 특급기술자:4, 고급기술자:3 등 가점부여)	지방 발주청에서 기시행 중 예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기술사와 학·경력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고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공사감리자가 소속되는 업체중 기술사 사무소 포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성 중 ('07년 중 시행예정)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성 중 ('07년 중 시행예정)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일정규모이상 토지굴착,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와의 협력의무화 ※ 단, 이미 배출된 동등 이상의 기술자 지위는 인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건축설비 설치시 건축사와의 협력 의무화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제7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중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학·경력자 제도 폐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마련 중('07.1월 현재) - '07년 중 시행령 개정완료 예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제463호)	공동주택 소음측정기관에 기술사 사무소 추가	• 연구용역 추진 : '06. 10~'07. 8 • 안마련 및 방침결정 : '07. 9 •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 '07. 9~10 • 공포 및 시행 : '07. 11

□ 노동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체제 개편 및 컨설팅 제도 활성화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기술사 적극 활용	향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련분야의 기술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과학기술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보고서에 서명날인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로 함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법령 개정 시 반영(매년 수급현황 분석예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기술부문별 필수 기술인력은 기술사 1인으로 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07.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시행('07년 중)전까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사 사무소가 입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협조·개선	기술사사무소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시 간소절차* 적용 * 제출서류, 회비납부요건 등

□ 정보통신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령기술사제도 개선내용추진현황 및 추진계획80억원이상 정보통신공사 사업수행시 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 의무화 ※ 단 기술사 공급가능 규모등 시장변화에 따라 점진 확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07.1월 국무회의 통과)에 반영 ※ 단, '80억원이상'을 '100억원이상'으로하고, 향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법령개정시 '8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예정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 수행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기술사 보유업체 우대(기술사 2.5, 특급기술자 2등 가점부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07.1월 국무회의 통과)에 반영

□ 환경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2제1항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시 소음진동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07년 • 개정안 마련 : '08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환경개선비용 분담법 시행령 제24조 제 2항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오분법)	시행규칙 제111조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 · 관리 위탁가능 대상에 기술사 사무소 포함	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07. 1. 5 공포) ② 「환경개선비용분담법」 개정안('06.12.8 국회통과)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 ③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 시행규칙에 반영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07. 3월~4월 • 규제심사: '07. 5월~6월 • 법제처심사: '07. 6월~7월 • 공포 및 시행: '07. 9. 28

□ 산업자원부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전력기술 관련 종합감리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을 포함(1년 유예기간 설정) ※ 전문감리업은 시장상황 반영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수요 발생시 반영
제12조의2에 의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9호 관련	설계감리대상 공사중 일정규모* 공사에는 기술사 배치 * 80만 KW이상 발전설비, 30만V이상 송전 · 변전 설비, 10만V이상 수전 · 구내배전 · 전력사용 설비	개정완료('06. 10.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전력기술 관련 설계감리자 기준에 기술사 포함 의무화	개정완료('06. 6. 30)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 1항	전력시설물 설계자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수요 발생시 반영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전기공사 수행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 (기술사:3, 특급기술자:2.5, 고급기술자:2 등 가점부여)	- 협의 완료 후 개정안에 반영 예정

□ 경찰청

관련법령	기술사제도 개선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총포 · 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화약류관리기술사에 시험발파 기술검토서 작성권한 부여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시험발파 기술검토서 작성권한이 「기술사법」제3조(기술사의 직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참조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 추진중인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문개정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임